
2023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공모 안내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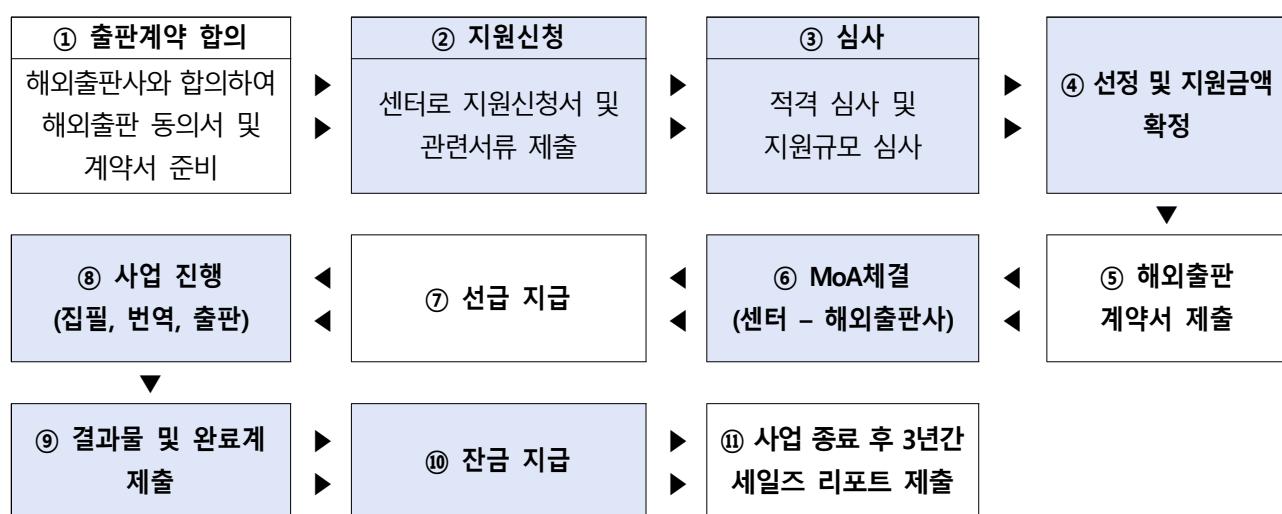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해외 전문가 및 연구자의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I 공모요강

구분	단행본							
공모대상	한국미술에 대한 책을 해외에서 출판하고자 하는 국내외 저자, 대학 및 연구소, 출판사, 미술관							
지원규모	건당 최대 5,000만원 이내							
지원내용	집필비, 번역비, 감수비, 출판 실비(인쇄, 디자인, 이미지 저작권 비용 등)							
	- 지원금 집행 및 출판사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출판사와 사전 협의 후 동의서(지정양식) 제출 필수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<thead><tr><th>해외출판 계약서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있는 경우</td><td>해외출판사 동의서 및 계약서</td></tr><tr><td>없는 경우</td><td>해외출판사 동의서</td></tr></tbody></table>		해외출판 계약서	제출서류	있는 경우	해외출판사 동의서 및 계약서	없는 경우	해외출판사 동의서
해외출판 계약서	제출서류							
있는 경우	해외출판사 동의서 및 계약서							
없는 경우	해외출판사 동의서							
지원조건	※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, 동의서 제출 생략							
	※ 해외출판사 동의서만 제출하고 선정된 경우, 9월 15일까지 계약서 미제출 시 지원 철회됨							
	- 전체 출판 비용 내 최대 80%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며, 출판사 자부담 20% 이상 필수							
	- 지원신청 금액 내 저자 집필비용 책정 권장, 출판 계약 내 저자 인세 및 로열티 책정 권고							
	- 다른 기관에서 동일 도서에 대한 집필 및 번역, 출판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시해야 함.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							
	- 종이책 출판은 필수, 전자책 출판은 선택사항(가산점 부여)임							
	※ 종이책 초판 인쇄 부수 300부 이상이어야 함. 단, 전자책 출판을 하는 경우 초판 인쇄 부수 합의 가능							
지원대상	※ 출판부수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							
	외국어로 집필 또는 번역된 단행본							
	전시도록, 작가 앤솔로지, 개론서, 작품집, 아티스트북, 작가 연구 또는 현장을 소개하는 도서 등							

사업기간	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하나 사업기간 내 출판이 완료되어야 함 (1개년) 선정 시 ~ 2023.12. (2개년) 2024.1. ~ 2024.12. (3개년) 2025.1. ~ 2025.12.
선정방식	적격 및 지원금 심사(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)
지원금 지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자-해외출판사 간의 출판 계약을 근거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해외출판사와 별도 협약(MoA)을 체결한 후 해외출판사로 지원금 직접 지급 - 선금/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 (선금) 해외출판 계약서 제출 확인 후 지원금의 70% 지급 (잔금) 출판 완료 후, 출판 도서 및 완료계 제출 확인 후 지원금의 30% 지급
선정자 의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판된 도서 30부 및 완료계(집행내역서) 제출 - 사업 종료 후 3년간 세일즈 리포트 제출 - 해외출판사는 협약 내 예산 계획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직접 집행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집행내역(지급내역서/계좌 이체 등의 증빙자료) 제출해야 함 - 출판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판/발행되었음을 판권란에 로고와 함께 표기(예시 : This publication was supported by KAMS(Korea Arts Management Service)) -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내용(기사, 비평, 매체 광고, 추천글 등) 제출
공모기간	2023년 2월 10일 ~ 2023년 4월 3일 16:00
심사일정	4월 3주 예정

[사업진행도]



1. 사업대상

- 한국미술에 대한 책을 해외에서 출판하고자 하는 국내외 저자, 대학 및 연구소, 출판사, 미술관 등

2. 지원대상 : 외국어로 집필 또는 번역된 단행본

※ 번역 예산 상한액 내 다국어 출판 가능

[사업대상별 지원도서(안)] ※ 다음의 자료는 참고용이며, 각 분야를 교차하여 지원 가능

지원대상	도서유형 예시
갤러리/미술관	전시도록, 작가연구 등
연구자 및 출판사	작가 앤솔러지, 현장소개, 개론서, 비평/이론서
작가	작품집, 아티스트북
시각예술 전문매체	한국미술 특집호

3. 지원조건

- 도서 출판의 경우

① 해외출판사와 해외출판에 대해 협의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도서

해외출판 계약서가 있는 경우 : 해외출판사 동의서와 계약서 모두 제출

해외출판 계약서가 없는 경우 : 해외출판사 동의서만 제출

※ 예산계획 및 일정, 지원금의 지급 및 집행, 결과보고 등 사업수행을 위한 내용과 출판사 의무사항에 대해 출판사와 사전 협의 후 해외출판사 동의서 제출 필수(지정양식)

※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, 동의서 제출 생략

※ 해외출판사 동의서만 제출하고 선정된 경우, 9월 15일까지 해외출판 계약서 제출(정해진 기간 내 계약서 미제출 시, 지원 철회됨)

- 전체 출판 비용 내 최대 80%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며, 출판사 자부담 20% 이상 필수
- 지원신청 금액 내 저자 집필비용 책정 권장, 출판 계약 내 저자 인세 및 로열티 책정 권고
- 다른 기관에서 동일 도서에 대한 집필 및 번역, 출판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신청서에 반드시 내용을 명시해야 함.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
- 종이책 출판은 필수, 전자책 출판은 선택사항(가산점 부여)임

※ 종이책 초판 인쇄 부수 300부 이상이어야 함. 단, 전자책 출판을 하는 경우 초판 인쇄 부수 합의 가능

※ 출판부수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

4. 지원규모 및 내용

1) 지원금액

※ 지원신청금은 전체 예산의 80%를 초과할 수 없음.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

- 최대 5,000만원 이내 출판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신청함

2) 지원항목

- 집필비, 번역비, 감수비, 이미지 저작권, 디자인, 인쇄, 출판사 기획비 등

3) 지원금 산출근거

- 집필 · 번역 · 감수 비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르며, 그 외 항목은 페이지 수, 도판, 인쇄부수 등에 따라 차등 책정한 후 세부 산출내역 제출

지원항목	최대신청가능액	산출기준
영문원고 집필 및 번역	21,600,000원 (A4 100매)	A4 1장(1,200자 기준) 216,000원, 200자 원고지 1매당 36,000원 ※ 집필비용과 번역비용 포함 최대 책정 금액
감수	10,800,000원	번역료의 50%까지 책정 가능
기타	50,000,000원	이미지 사용료, 디자인, 인쇄비 등 실비 ※ 페이지 수, 도판, 인쇄부수 등에 따라 차등 책정
기획비	지원신청 금액의 10% 상한	

※ 유통, 홍보, 운송 비용 등은 지원 항목이 아님

5. 사업기간 : 최대 3년까지 책정 가능

구분	사업기간	비고
1차년도	선정 시 ~ 2023.12.	- 사업기간 내 결과물 제출 필수
2차년도	2024.1. ~ 2024.12.	- 사업기간을 다년으로 설정할 경우, *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필수. 지원신청서 '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(지원서 p6)'에 일정과 계획을 상세히 작성
3차년도	2025.1. ~ 2025.12	

6. 지원금 지급방법

- 저자-해외출판사 간의 출판 계약을 근거로,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해외출판사와 별도 협약(MoA)을 체결한 후 지원금을 지급
- 지원금은 선금과 잔금을 7:3의 비율로 분할 지급함. 선금은 해외출판 계약서 수령 이후, 잔금은 출판도서 및 완료계 수령 이후 지급함

※ 본 지원금은 출판사로 지급되며 개인이 수령 및 집행할 수 없음

7. 선정자 의무사항

- ※ 해외출판사는 협약 내 예산 계획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직접 집행.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집행내역(지급내역서/계좌이체 등의 증빙자료) 제출해야 함
- ※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출판 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해외출판사이므로, 하기 명시된 제출 서류(보고서, 변경신청서, 완료계 등)에는 해외출판사 대표 또는 담당 편집자의 사인이 필요함

1) 사업수행중

- 사업기간을 2년 이상 설정한 경우, 매년 12월 간략 보고서 제출(지정양식)
- 집필완료 시점에 원고 제출 및 분량 확인
 - ※ 집필 후 원고 분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, 지급한 원고비 만큼의 추가원고를 요청하거나 잔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음
- 사업수행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변경신청서 제출

2) 결과물 제출

- 협약된 사업기간 내 출판 완료 및 출판도서 30부 제출
- 출판/발행 시,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판/발행되었음을 판권란에 로고와 함께 표기(예시 : This publication was supported by KAMS(Korea Arts Management Service))
- 완료계 및 관련 증빙자료(집행내역서, 계좌이체/결제 내역 등) 제출

3) 사업 종료 후

- 사업 종료 후 3년간 세일즈 리포트 제출
- 출판물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내용 제출(기사, 비평, 매체 광고, 추천글 등)

III

공모 신청 및 심사 안내

1. 공모 및 접수기간 : 2023년 2월 10일 ~ 2023년 4월 3일 16:00

2. 접수방법 : 온라인 제출 art-trans@gokams.or.kr

3. 제출서류 및 방법 : 전자파일(한글, 워드, PDF) 형태로 제출

구분	내용
도서 출판	필수 ① 지원신청서(지정양식, 국영문)

	※ 한글 또는 워드 형식으로 제출 ② 지원자 유형에 따라 (개인) 신청자 이력서 (출판사) 출판사 신고필증, 출판사 소개서 (단체/기관) 사업자등록증, 단체/기관 소개서 ③ 해외출판사 동의서(지정양식) ※ 해외출판사가 직접 지원신청하는 경우, 동의서 제출 생략. 그 외 경우는 제출 필수이며,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 ④ 목차 및 내용구성(안)과 도서요약본(5매 내외) ※ 지원신청서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⑤ 저자 이력서 ⑥ 해외 출판사의 최근 3년간 포트폴리오(시각예술 출판 중심)
선택	⑦ 해외출판 계약서 ※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경우,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제출 ※ 예산계획 및 수익관련 협의내용, 출판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※ 선정 시, 9월 15일까지 제출 필수, 미제출 시 지원 취소됨 ⑧ 국내 출판된 도서의 경우 1권 제출

※ 지원신청서 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고지확인란 작성 필수

4. 심사 및 선정

- 심사개요

구분	내용
심사방식	서류 및 인터뷰 심사
심사위원	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
심사기준	① 내용의 적합성(20%) ② 출판 계획의 합리성과 신뢰성(20%) ③ 출판사의 역량(30%) ④ 책자의 활용 및 기대효과(30%)

- 심사일정 : 4월 3주 예정
- 결과발표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
5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공모 마감 이후에는 제출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
-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이 취소 되며 지원금은 100% 반납됨
- 표절원고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원고를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, 지원이

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, 지원금은 100% 반납 처리되며,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

- 센터와 합의한 기간 이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, 지원금은 100% 반납됨

※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2021.1.5.)에 의거하여 성희롱·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